

안산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44
----------	-----

제출년월일 : '99. 2.
제 출 자 : 안산시장

개정사유

- 안산시제2의견국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정수를 40인 이내에서 50인 내외로 개정하여 탄력있는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하고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두되,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제2의견국 추진반을 두며, 추진반에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사무직원으로 들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위원정수의 조정 및 해촉규정 추가(안 제3조)
 - 위원정수를 50인 내외로 개정하고, 위원해촉 규정을 신설
- 상임위원회 구성 신설(안 제8조)
 -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회를 두되,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제2의견국 추진반 신설(안 제9조)
 -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제2의견국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며, 추진반에 행정기관 소속공무원과 관련분야전문가를 사무직원으로 들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 수당 등 추가(안 제12조)
 -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상임위원,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한 수당 지급 명문화

개정조례안 : 별첨

안산시제2의견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제2의견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40인 이내”를 “50인 내외”로 하고, 동조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위원으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해촉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상임위원회) ①위원회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지명한다.

④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의 서기가 겸임한다.

제9조(제2의견국 추진반) ①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2의견국 추진반을 둔다.

②총괄책임관은 부시장, 책임관은 행정지원국장, 추진반장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추진반에 행정기관 소속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사무직원으로 들 수 있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등)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상임위원,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p>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생략)</p> <p>③(생략)</p> <p>④(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3조(구성)①.....50인내의</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위원이 직무의 내의를 불문하고 위원으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해촉한다.</p> <p>제8조(상임위원회)①위원회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p> <p>②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지명한다.</p> <p>④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사1인을 두되 위원회의 서기가 겸임한다.</p> <p>제9조(제2의건국 추진반)①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2의건국 추진반을 둔다.</p> <p>②총괄책임관은 부시장, 책임관은 행정지원국장, 추진반장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추진반에 행정기관 소속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p>

신 . 구조 문 대 비 표

개 정 전	개 정 후
<u>제8조(회의록) (생략)</u>	<u>제10조(회의록) (현행과 같음)</u>
<u>제9조(의견청취) (생략)</u>	<u>제11조(의견청취) (현행과 같음)</u>
<u>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상임위원,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제11조(운영규정) (생략)</u>	<u>제13조(운영규정) (현행과 같음)</u>

안산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744
----------	-----

제안년월일 : 1999. 2. 8.
제안자 :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 외 6인

1. 수정이유

- 안 제3조 다음에 위원의 해촉조항을 신설하고 제2의견국 추진반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 라는 내용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수정코자 함.

2. 주요 골자

- 제3조 제5항을 삭제하고 동항 내용을 제3조의 2(위원의 해촉)로 가지조를 신설하며,
- 제9조 제2항중 “소속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를 “소속공무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며

- 제12조(수당등)는 당초 안대로 수정하여,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안산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위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위원으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해촉한다.

제9조 제2항중 “소속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를 “소속공무원을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구성)</p> <p>①~④(생략)</p> <p><u>⑤위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위원으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해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제9조 (제2의건국추진반)</p> <p>①(생략)</p> <p>②총괄 책임관은 부시장, 책임관은 행정지원국장, 추진반장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추진반에 행정기관 소속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p> <p>제12조(수당등)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상임위원,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3조(구성)</p> <p>①~④(원안과 같음)</p> <p>< 삭 제 ></p> <p>제3조의2(위원의 해촉)위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위원으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해촉한다.</p> <p>제9조 (제2의건국추진반)</p> <p>①(원안과 같음)</p> <p>②.....</p> <p>.....</p> <p>.....</p> <p>소속공무원을 둘 수 있다.</p> <p>제12조(수당등)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